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법의심사항에 대한 관계 기관의 처리 결과 통보 의무화》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64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1276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부동산 거래 등 위법의심사항에 대하여 고발을 받거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조치 결과 통보 의무화(안 제6조제5항 후단 신설)	2
나. 부칙	11

I.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1276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8.

다. 회 부 일 : 2025. 9.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 이후에 사후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수사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 건을 어떻게 수사 또는 조사하고 처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상거래 관련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이 해당 사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위법한 거래를 엄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5항).

3. 검토의견

가. 부동산 거래 등 위법의심사항에 대하여 고발을 받거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조치 결과 통보 의무화
(안 제6조제5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u>-----. 이 경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 및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사 및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u>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에는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하여 일정 사항의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첫째,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1)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거래 당사자²⁾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이하 “부동산 거래 신고”라 함)하여야 함.

둘째,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2제1항3)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함)된 경우 그 해제등을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이하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라 함)하여야 함.

셋째,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⁴⁾에 따라 외국인등⁵⁾은 ①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②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이하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라 함)하여야 함.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 외국 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이와 같은 각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제1항⁶⁾에 근거하여 신고관청은 같은 법 제3조(부동산 거래 신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또는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신고내용조사”⁷⁾라 함)를 취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3조(부동산 거래 신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또는 제8조(외국인등의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제5항⁹⁾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으로 하여금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위법의심사항에 대한 고발·통보 조치”라 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위법의심사항에 대한 고발·통보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 및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사 및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도록 수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 결과 통보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후단 신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의 신고내용조사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계 기관에 대한 고발·통보 등의 조치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철저한 사후조치를 통해 신고내용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취지¹⁰⁾의 규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의 경우 현행법 제6조제5항에 근거하여 위법위반사항별로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수사 의뢰(경찰청), 편법 증여 등 통보(국세청), 대출자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통보(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거짓 신고 등 통보(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표〉 국토교통부장관의 부동산 거래 등 위법위반행위 고발 또는 통보 현황

(단위: 건)

연도	소계	경찰청 (중개 수수료 초과 등)	국세청 (편법 증여 등)	금융위 /행정안전부 (편법 대출 등)	지방자치단체 (거짓 신고 등)	관세청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법무부 (무자격 임대업 등)
계	34,704	1,995	14,369	1,398	16,554	311	99
2020년 ^{주)}	811	8	555	37	211	-	-
2021년	1,587	34	1,093	84	376	-	-
2022년	9,357	94	4,910	233	3,943	121	57
2023년	9,589	1,426	2,575	155	5,310	100	23
2024년	6,606	191	2,724	460	3,133	82	16
2025년 (~8월)	6,754	242	2,512	429	3,581	8	3

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법률 제16494호, 2019. 8. 20. 개정, 2020. 2. 21.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내용조사 직접 실시 권한이 부여된 2020년 2월 21일부터 조사 실시

※ 자료: 국토교통부

10) 제20대국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제2015623호)의 제안이유 및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위법의심사항에 대한 고발·통보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처리 결과 공유 등의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국토교통부 및 신고관청이 위법의심사항에 대한 관계 기관의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고내용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¹¹⁾.

정부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대응을 위하여 범부처 공조체계를 강화¹²⁾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신고관청 및 수사·금융·과세 등 분야의 유관 행정기관 간 협조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의 위법의심사항에 대한 고발·통보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관계 기관의 조치 결과 통보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신고내용조사 결과의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제5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이해됨.

11)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 2023년 및 2025년(10월말 기준)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하여 각각 8건, 11건 및 8건 등 총 27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2021년과 2023년에 수사의뢰한 19건 중 12건은 경찰의 수사결과(검찰 송치 1건, 불송치 11건)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12)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5년 10월 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관계부처합동,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 2025. 10. 1.).

또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동년 10월 10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 간의 협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거래 수사의뢰」, 2025. 10. 12.).

참고로, 의무이행의 주체를 행정기관의 장으로 명시하는 법체계 및 입법례¹³⁾ 등을 고려하여 안 제6조제5항 후단의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 및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 및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 위법의심사항에 대하여 각 기관의 조치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한다면 신고 내용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와 아울러, 환류된 조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신고내용조사에 반영함으로써, 빈번하게 적발되는 위법의심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등 향후 조사업무체계를 개선하고 신고내용조사 기법 등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한편, 안 제6조제5항 후단은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 및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사 및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제2항14)에서 같은 조 제1항15)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으로 하여금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결과 보고 체계와 안 제6조제5항 후단에 따른 수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 결과 통보 체계가 상응하도록, 안 제6조제5항 후단의 위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16).

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6) 다만, 안 제6조제5항 후단에 따른 수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 결과 통보 의무는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이고 수사결과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법적 명확성과 행정기관의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이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5.)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소관사항 예시>

- 법률의 소관사항 ①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 대통령령의 소관사항 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③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④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 - 총리령·부령의 소관사항 ①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③ 각 부처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②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②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행정기관의 내부조직에 관한 사항 ②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복제·서식 등과 같은 절차적·기술적 사항	
---	--	--	--

나.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신고내용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6조제5항 후단¹⁷⁾에 따른 대통령령의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안 부칙 제2조는 안 제6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신고내용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8

17) 「개정안」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 및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사 및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